# 생활관 운영규정

제정 2014. 6. 25. 제6차 개정 2024. 6. 21.

## 제1장 총칙

- 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직제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라 생활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2.4.20.)
- 제2조(명칭 및 소재) 본 기숙사는 상지대학교 생활관이라 칭한다. 남학생 생활관은 믿음관·여학생 생활관은 맑음관으로 구분하고, 우리대학교 안에 둔다.
- **제3조(개관기간)**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을 제외한 개학기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 할 수 있다.(단, 입사 및 퇴사에 필요한 준비기간은 2일 이내로 하되 개관기간에 포함한다.)
- 제4조(이용) 생활관의 시설 이용은 관생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육 목적에 부합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관생이 아닌 외부인이나 단체에게도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.(이하 입사한 학생은 "관생"이라 한다.)
- 제5조(준칙)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준칙은 따로 정한다.

#### 제2장 직제

- **제6조(관장)** ① 생활관에 생활관장을 두고 관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  - ② 관장은 소속직원을 감독하며, 생활관을 운영 및 관리할 책임을 진다.
- **제7조(행정실)** ① 생활관에 행정실을 두고, 행정실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② 생활관 관리를 위하여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- **제8조(사감)** ① 사감은 관생들의 생활지도, 안전관리, 상담 및 입·퇴사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다.
  - ② 사감은 남·여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- 제9조(감사) 생활관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감사는 우리대학교 감사 규정에 따른다.

## 제3장 운영위원회

**제10조(운영위원회)** 생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11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.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**제12조(위원장)** 위원장은 학생취업지원처장이 되며,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. (개 정 2022.4.20.)

제13조(회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4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생활관 준칙의 제정, 개정과 폐지
- 2. 생활관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
- 3. 관생 자치회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
- 4. 생활관 관리비 및 사용료, 수도광열비 책정 (개정 2023.8.24.)
- 5. 관생선발 기준 설정 및 우선선발에 관한 사항
- 6. 관생 생활관 이용 만족도 조사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(신설 2016.6.21.)
- 7. 그 밖에 생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(항 변경 및 개정 2016.6.21.)

제14조의2(평가주기/활용) 관생의 생활관 이용 만족도 조사는 1년 단위로 실시하고,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한다. 평가 후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연도에 반영한다. (신설 2016.6.21.)

#### 제4장 입사 및 퇴사

제15조(입사자격) 생활관의 입사자격은 본교 내·외국인 학위과정생 및 외국인 비학위과정생 (국제교육원 추천에 한함.)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으로 하며, 원주시 지역 관내(부론 면, 지정면 제외)에 연고가 없으며 통학이 어려운 재학생 및 신입생에게 자격을 부여한다. (개정 2019.6.25., 2022.4.20., 2024.6.21.)

제16조(입사결격사유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다.

- 1.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- 2. 직전학기에 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
- 3. 법정 전염성 질환자
- 4. 휴학중인 사람
- 5.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
- 6.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은 사람

- 7.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**제17조(선발)** ①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관생 선발기간 중에 소정의 신청서를 생활관장에게 제출한다.
  - ② 생활관장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선발한다. 다만, 선발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다.
- **제18조(입사등록 및 취소)** ① 선발된 관생은 생활관 관리비를 납부하고 건강진단서 및 기타 서류를 갖추어 지정 기일내에 입사등록을 필하여야 한다.
  - ② 관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사 할 수 없다.
  - ③ 선발된 관생중 입사 마감일로부터 이유없이 3일이 경과하여도 입사하지 않은 관생은 입사를 취소 할 수 있다.
- 제19조(퇴사) ① 생활관장은 관생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관생에 대하여 즉시 퇴사 조 치하고 학부형에게 통보한다.
  - ② 퇴사처분에 관한 사항은 생활관 관생준칙으로 따로 정한다.

## 제5장 납입금

- **제20조(납입금)** ① 생활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생활관 관리비를 학사일정에 따라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을 정하여 징수한다.
  - ② 관생이 납부한 생활관 관리비와 수도광열비는 교비에 편성하고,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23.8.24.)
  - 1. 관리비 : 생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
  - 2. 수도광열비 : 생활관 수도광열비에 대한 비용 (신설 2023.8.24.)
  - ③ 중간 퇴사 및 입사생의 생활관 관리비 환불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- 제21조(경비부담) 생활관의 관리운영 및 관생 생활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관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다.

#### 제6장 관생회

- 제22조(관생회) 생활관내에 관한 민주적 자치 능력을 함양하고 관생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해 관생으로 구성하는 관생회를 남·여 각각 둘 수 있다.
- **제23조(관생임원)** ① 남·여 관생회는 회장, 부회장, 총무, 층장 각 1명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6.9.12.)
  - ② 임원은 학기초에 관생들이 선출하고, 임기는 생활관의 재실(2학기 종강일)시 까지로 한다.
- 제24조(회비) 관생은 관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### 제7장 게스트룸

- 제25조(게스트룸) ① 교내 구성원, 외래 교수 및 외부 초청인사의 숙박편의를 위하여 생활관 내의 게스트룸을 설치하고 운영한다.
  - ② 게스트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#### 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규정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종전규정의 폐지)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종전 생활관 운영규정은 폐지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498, 2016.06.21.)

이 규정은 201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691, 2016.09.12.)

이 규정은 201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.)

이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257, 2022.04.20.)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1720, 2023.08.24.)

이 규정은 2023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1425, 2024.06.21.)

이 규정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